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29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서삼석·허영·박용갑
이원택·박민규·오세희
김교홍·신정훈·문금주
정준호·임미애·조인철
이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사후관리)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제6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 음)</p> <p><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 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p>